

일본의 헤이그 협약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행 현황

2025년 4월 1일

외무성 영사국 헤이그협약실

1. 개요

2014년 4월에 일본에서 헤이그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협약의 국내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시에 관한 법률(헤이그 협약 실시법)'이 시행되어 외무대신이 일본의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 중앙당국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 헤이그협약실은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헤이그 협약을 적용받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연락을 중개하면서 아래 2의 각종 지원을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각 체약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부모와 아동의 면접교섭을 실현하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본에서 외국으로의 아동 반환 관련 사안의 약 60%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 절차를 거쳐 아동을 반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중 90% 이상에서 아동이 실제로 해당 외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아동 반환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약 60%가 반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헤이그 협약 이행 현황은 적절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헤이그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과 아동이 함께 일본으로 일시 귀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 여러 국가, 특히 법조 관계자에게 일본의 노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얻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본 팩트시트에서는 일본의 헤이그 협약 이행 현황 및 아동 반환 실현을 위한 일본 중앙당국의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일본에 소재한 아동의 반환 원조 절차

외국에서 일본으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 발생한 경우 남겨진 부모는 아동 반환을 위해 일본 중앙당국(외무성)에 원조를 신청¹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일본 중앙당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2주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헤이그 협약 실시법에 따라 아동의 출입국 기록과 주민표를 확인하여 아동의 소재를 특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앙당국은 신속하게 원조 결정을 내립니다. 원조 결정 후, 중앙당국은 아동을 이동시킨 뒤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향후 절차 진행 방식에 관한 의향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당국은 재판의 신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¹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입력 가능한 PDF 양식의 '아동반환 원조 신청서' 및 신청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한 '원조 안내서'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일본 중앙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jp/fp/hr_ha/page22e_000337.html

-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ADR(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기관을 이용한 협의,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당국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ADR 기관 이용 촉진², 변호사 소개³, 일본 법원 제출용 증거 서류 번역 위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반환 재판 중이라도 아동과의 면접교섭을 희망할 때는 부모와 아동 면접교섭 지원단체 소개 및 이용 비용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재판의 관할이 도쿄 또는 오사카 가정법원 중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1 심 심리는 대체로 약 60 일이 소요됩니다. 기일은 일반적으로 2 회 열리며, 조정⁵에 부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아동 반환 재판의 신청 주체는 남겨진 부모이며, 중앙당국에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 중앙당국의 원조 결정은 반환 재판 신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남겨진 부모는 일본 중앙당국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국 금지 명령 및 여권 제출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중앙당국에 원조를 신청한 경우 일본 중앙당국은 법원의 조사 촉탁에 대해 아동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원조 결정 사안 관련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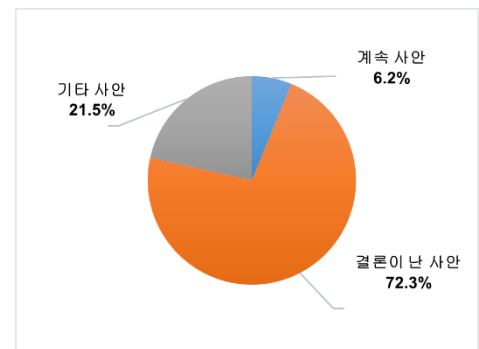
(1) 2014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일본 중앙당국은 외국에서 이동되어 일본에 소재한 아동에 관한 사안 195 건, 일본에서 이동되어 외국에 소재한 아동에 관한 사안 174 건에 대해 반환 원조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일본에 소재한 아동의 외국 반환에 대한 원조를 결정한 195 건의 사안 중 아동의 반환 또는 불반환이라는 결론이 난 사안은 141 건으로, 전체의 72.3%입니다.(그림 a) 이러한 사안이 문제 해결에 이른 방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림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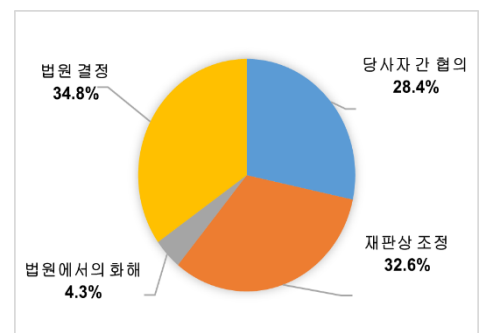
- 당사자 간 협의(ADR 포함): 40 건(28.4%)
- 재판상 조정: 46 건(32.6%)
- 법원에서의 화해: 6 건(4.3%)
- 법원 결정: 49 건(34.8%)

(3) 결론이 난 사안 141 건 중 반환이라는 결론에 이른 사안은 총 82 건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별로 반환이라는 결론이 난 사안의 건수(비율)는 다음과 같습니다.(그림 c)

- 당사자 간 협의(ADR 포함): 24 건(60.0%)
- 재판상 조정: 26 건(56.5%)
- 법원에서의 화해: 4 건(66.7%)
- 법원 결정: 28 건(57.1%)



외국 반환 원조 결정 내역(그림 a)



문제 해결 방법(결론이 난 사안)(그림 b)

² 자세한 내용은 아래 4.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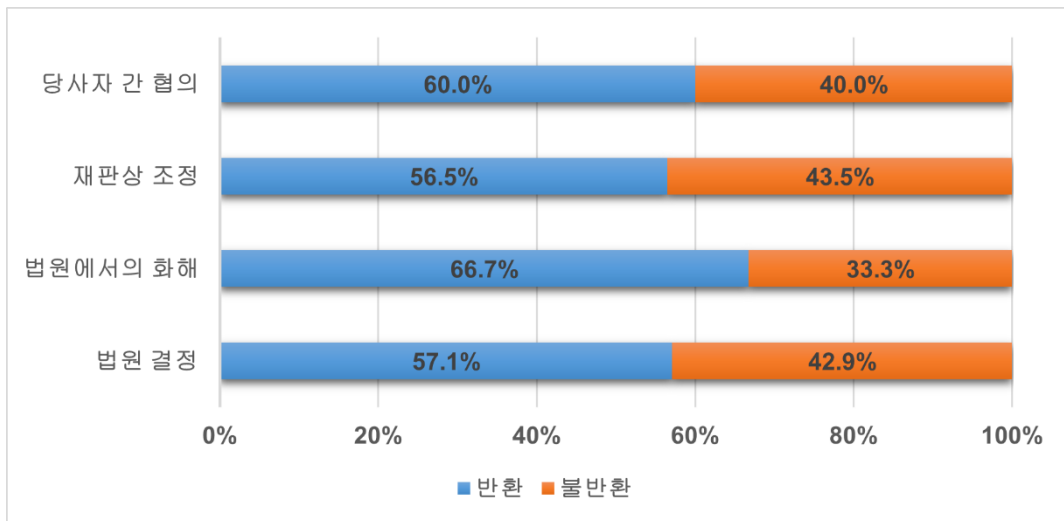
³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통상적으로 변호사 3 명의 이름 및 연락처가 제공됩니다.

⁴ 외부성은 직접 면접교섭 4 회, 부모와 아동 면접교섭 지원단체의 전문가가 관여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웹 기반 면접교섭 4 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⁵ 자세한 내용은 아래 4. (2) 참조

어느 해결 방법에서나 불반환에 비해 반환이라는 결론에 이른 사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동 반환이라는 결론이 난 사안은 약 60%이며, 그중 90% 이상은 이미 아동 반환이 실현되었습니다.

(4) 다양한 해결 방법 중 법원의 반환 재판과 관련하여 202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헤이그 협약 체결국이 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안의 총수 중 아동을 상거소지국으로 반환하게 된 것은 59.0%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안 중 반환 결정이 난 사안의 비율은 57.1%로, 일본의 아동 반환 재판에서 반환 결정 비율은 세계적인 수준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별로 아동 반환이라는 결론이 난 사안의 비율(그림 c)

4. 우호적 해결 촉진

상거소지국으로의 아동 반환은 중요하지만, 이는 그 아동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 감호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일본 중앙당국은 헤이그 협약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결론이 난 사안 중 약 65%가 자발적 협의, 재판상 조정, 법원에서의 화해를 통해 해결⁶되고 있으며,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1) ADR(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기관 이용에 대하여

헤이그 협약은 ‘자발적인 아동 반환을 확보하거나 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불러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앙당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7 조 제 2 항 c 호) 일본 중앙당국은 변호사회 등이 설치한 ADR 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들이 제 3자의 관여하에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DR에서는 변호사나 심리상담사 등의 중립적인 제 3자가 개입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알선합니다. ADR에서는 재판에 비해 협의 기일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아동 반환 여부 이외에도 아동 감호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앙당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아동 반환 안전과 아동과의 면접교섭 안전을 합쳐 총 79건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ADR 이용을 지원했습니다.

⁶ 위 3. (2) 및 그림 b 참조

(2) 재판상 조정에 대하여

법원에 아동 반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은 가능한 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우호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조정 절차에 부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이 당사자 쌍방에게 사정을 묻거나 의견을 듣고, 필요에 따라 아동 면접 기법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쌍방이 납득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언이나 알선을 합니다. 재판상 조정에서는 ADR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상거소지국으로 반환할지 여부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된 경우(조정 성립) 법원 결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이 종료되며 법원의 아동 반환 결정 절차가 계속됩니다.

5. 아동 반환 집행

(1) 법원 결정의 강제 집행

아동을 상거소지국으로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동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일본에서는 남겨진 부모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간접 강제: 법원이 아동 반환을 명령받은 사람에게 금전적 지급을 명하여 간접적으로 아동 반환을 실현하게 한다는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 (b) 대체 집행: 법원 집행관이 아동 반환을 명령받은 사람의 감호로부터 아동을 강제적으로 해방함으로써 대개 남겨진 부모가 스스로 상거소지국으로의 아동 반환을 실현하게 한다는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집행 현장에 일본 중앙당국 직원이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강제 집행 절차의 실효성 향상

아동 반환 강제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 실시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법원의 대체 집행(집행관의 강제 집행)을 실시한 사안의 반환 실현율은 75%로, 실현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3) 인신 보호 절차

헤이그 협약상의 절차와는 별도의 체계이지만, 상거소지국으로의 아동 반환 과정에서 인신 보호 절차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신 보호 절차에서는 아동 반환을 명령받은 사람이 아동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그 사람의 법원 출석을 강제하여 아동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 반환을 명령받은 사람의 법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력도 행사됩니다.